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2019. 2.

# 목차

## CONTENTS

### 제1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바로 알기

##### I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및 특징

- |                    |    |
|--------------------|----|
| 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6  |
| ②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 10 |

### 제2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법 알기

##### I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 |                                |    |
|--------------------------------|----|
| 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 18 |
| ② 대응 주체별 역할                    | 20 |
| ③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           | 25 |
| ④ 대상별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 28 |
| ⑤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 31 |

##### II .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 |                            |    |
|----------------------------|----|
| ① 학생(피해자)–학생(가해자)          | 35 |
| ② 학생(피해자)–교직원(가해자)         | 53 |
| ③ 교직원(피해자)–교직원(가해자)        | 63 |
| ④ 교직원(피해자)–학생(가해자)         | 75 |
| ⑤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대응 사례 | 84 |

## 부록

부록 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0
부록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2
부록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9
부록 4: 형법	152
부록 5: 사안 처리 관련 서식	155

## 표 목차

[표 1-1]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률 체계	7
[표 1-2] 성희롱 유형별 예시	14
[표 2-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담당업무별 교사들이 해야 할 일	22
[표 2-2]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23
[표 2-3] 가·피해자 대상관계별 주관 위원회	29
[표 2-4] 관련 위원회의 역할	30
[표 2-5] 대상별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	32
[표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단계와 수행 내용	46
[표 2-7]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	49
[표 2-8] 대상별 조사 주체 및 조사내용	58
[표 2-9]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65
[표 2-10] 성고충상담원 역할 및 구성요건	66
[표 2-11] 교직원간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72
[표 2-12] 학생(가해)–교직원(피해) 사안 발생 시 조치 사항	82

제1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바로 알기



## I.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및 특징

1

#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 ①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함

## 가. 성희롱·성폭력의 법령상 개념

-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은 구별됨. ‘성폭력’은 형법을 기본으로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법적 근거를 둠.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둠

[표1-1]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률 체계

구분	관련 법령	법적 정의	법 적용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인권위원회법</li><li>• 아동복지법</li><li>• 양성평등기본법</li><li>•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li></ul>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상위기관에 제소				
성 폭 력  특별법	<table border="1"><tr><td>기본법</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형법</li></ul></td></tr><tr><td>특별법</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i><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li><li>• 아동복지법</li></ul></td></tr></table>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형법</li></ul>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i><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li><li>• 아동복지법</li></ul>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써 강간, 강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형사처벌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형법</li></ul>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li><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li><li>• 아동복지법</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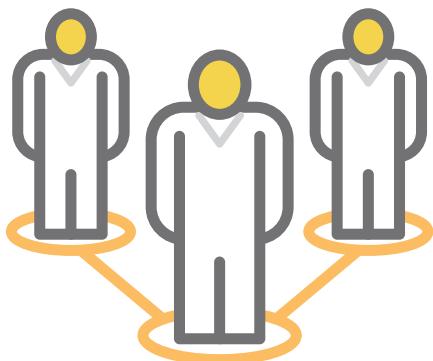
### ● 학교 관련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유네스코 개념

- 유네스코와 UN Women(2016)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학교 관련 젠더 폭력(school-related gender-based violence)'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학교 내·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적(性的)·신체적·심리적 폭력 행동 또는 위협을 말하며, 젠더에 대한 규범과 고정관념의 결과로 행해지고 불평등한 권력(power)의 차이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을 말함. 여기에는 언어적 폭력, 괴롭힘(bullying), 성폭력·성희롱, 강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性的)·신체적·심리적 폭력이 포함됨
- 학교 관련 젠더 폭력은 학교 안, 학교 주변, 등굣길 또는 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음
- SNS, 이메일, 휴대폰 등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성희롱 및 온라인 길들이기(online grooming)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포함함

## 나. 학교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개념을 기본으로 함. 이에 더해서 학교 내 구성원이 대상이므로, 학생이 관련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 학생 보호와 행위 학생 조치 및 선도가 이루어짐. 교직원이 관련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권보호, 징계 및 조치가 이루어짐
- 형사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직원의 경우 징계절차상, 학생의 경우 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상 성희롱·성폭력(성비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법령상 개념으로 볼 때 성폭력이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 하고 있는 반면, 성희롱의 경우 해당 범죄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 개념 정의가 한정적임
- 본 매뉴얼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을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성적(性的)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 학교 내 성희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건전한 성적(性的)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관련 판례에 근거)
- 학교 내 성희롱의 대상이 교직원(성인)일 경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근거)



## 2

#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



## ②

#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의 유형

## 가. 행위유형별 분류

강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강제 추행,  
준강간 ·  
준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

성희롱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대상별 분류

아동 성폭력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청소년성폭력과의 차이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됨
청소년 성폭력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친족성폭력

- 법률에서 정한 친족(혈족과 인척)에 의한 성폭력으로, 4촌 이내의 혈족(친부모, 친형제, 조부모, 이모, 외삼촌, 백숙부, 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척 관계로 의붓아버지, 형부, 제부, 의형제와 같은 사실상 관계의 친족을 포함)에 의한 성폭력을 ‘친족성폭력’으로 분류하며 가중처벌하고 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임.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함
- 친족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10대~20대이며, 아버지(친부와 의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른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됨.
- 대부분 유아 또는 아동기 때 시작되어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됨. 대부분 지속적 피해를 경험하며, 피해횟수를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음.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해자들이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큼.
- 피해자가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움. 피해 직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된 경우는 적고, 가족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움. 다른 가족이 알게 되거나 피해가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묵과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데이트성폭력/데이트폭력

- 데이트성폭력은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함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함.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큼.
-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함. 예를 들어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구타하는 행위,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위, 데이트상대를 위협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데이트폭력에 해당됨.

### 그루밍(grooming)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성범죄를 제3자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짐
- 그루밍 과정은 복잡하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침. 먼저 잠재적 가해자는 대인 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선택해서 대상(잠재적 피해자)이 바라는 바(특별한 관심, 애정, 선물)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음.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만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며(sexualizing) 이러한 성적 관계를 정상화시킴(normalizing). 이후 비밀 유지 및 관계의 상실 등을 부각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를 계속 유지함

##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2017)에서 실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분위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문항)은 다음과 같음

[표1-2] 성희롱 유형별 예시

성희롱 유형	행동 예시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쁘다며(혹은 잘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li> <li>• 헤드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li> <li>•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li> <li>•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치마길이 확인이나 속옷 착용 확인 등)</li> <li>•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li> <li>•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li> <li>• 나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li> <li>•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요청에 따라 안마를 하게 된 행위</li> </ul>
언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li> <li>•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li> <li>• 나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li> <li>•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li> <li>• 수업시간에 (암기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li> </ul>
시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금슬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li> <li>•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li> <li>• 나에게 컴퓨터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성적인 행위, 성적인 언행, 여성의 성적대상화한(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li> <li>• 나에게 성적인 비유,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li> <li>•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li> <li>•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li> </ul>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li> <li>•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li> </ul>



제2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법 알기



## I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 1

##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



# 1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절차

### 성폭력 피해 의심

- 피·가해사실 확인
- 상담
  -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1899-3075), 117,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 상담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 피·가해자 긴급 조치

- 피·가해자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수업배제·업무배제 등)
-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内外 상담실(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등 적절한 조치,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자 지지
  -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조전문 기관 (해바라기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연계
-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보고(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학교) 상담, 사안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 사안 처리

-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일 경우 p.36 참고
-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일 경우 p.54 참고
-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일 경우 p.64 참고
- 학생(가해자) · 교직원(피해자)일 경우 p.76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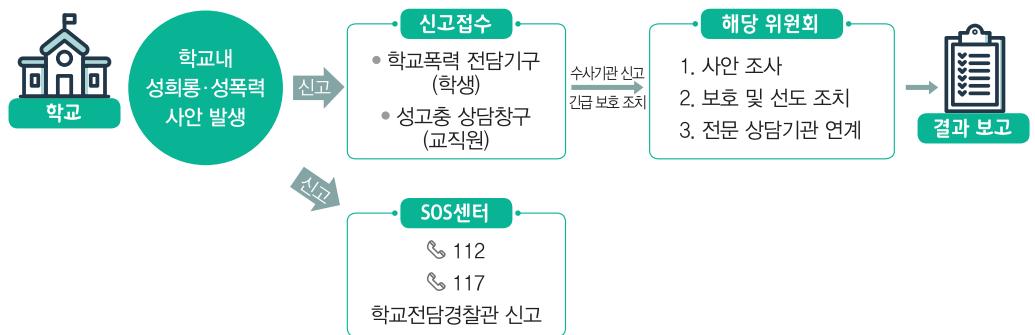
[ 대응 주체별 역할 ]



# ②

## 대응 주체별 역할

### 가. 학교 차원



#### (1) 학교장

-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구성원을 소집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아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사안 보고를 받은 즉시 학생사안의 경우 신고 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
- 법에 정한 신고 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 제공
- 소문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게시
- 서로 존중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이 먼저 나서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을 평소에 시행

## (2) 교사

- 교사는 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장이나 교감 등 어떤 상급자도 법적 신고 의무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함
-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음
- 교사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에 문의 및 상담
-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 및 피해자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주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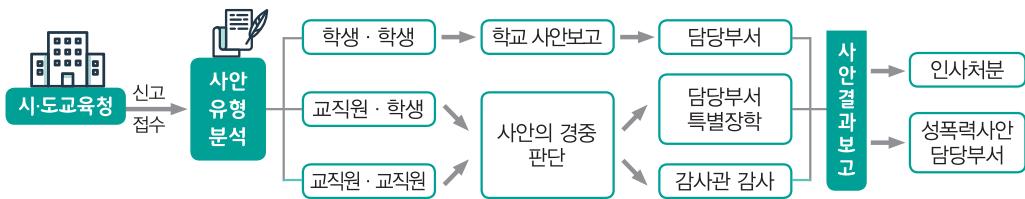
### [표2-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담당업무별 교사들이 해야 할 일

책임교사	사안 조사를 총괄하고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함
담임교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초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갖춘다.
보건교사	피해·가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의료조치를 취하되, 가급적 법의학적 증거 채취가 가능한 전문 기관 연계
전문상담(교)사	피해·가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확인하고, 심리상담 등 응급조치를 취함

###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어린 유감을 표현
-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 학생의 요구 사항과 사실 관계를 파악
- 피해자의 경우 치료와 더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성폭력전담기관 등 전문 기관과 신속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피해 학생이 말해 준 내용에 대해 침착하게 반응하되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피해자 자신이 겪은 일을 축소하거나 자신이 말한 내용을 축소할 수 있음
- 피해자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것임을 알려줌
-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성폭력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안내해 줌

## 나. 시·도 교육청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 자료를 교육청 단위에서도 개발하여 단위학교 측에 배포
-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현장의 요청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
- 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의결기한 내 신속하게 징계 처분(단, 수사기관 수사진행 등을 이유로 징계 보류가 가능하나 징계 사유가 분명한 경우 수사진행과 별도로 징계 처분)
- 또한 행위(가해) 교직원이 법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이 공무원 복무규정의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처리해야 함

[표2-2] 시도교육청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지역	전담부서	전화번호
서울	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699
세종	학생생활안전과	044-320-2411
광주	민주시민교육과	062-380-4080~4083
대구	학교생활문화과	053-231-0502
대전	학생생활교육과	042-616-8464(초등), 042-616-8463(중등), 042-616-8462(고등)
부산	학교생활교육과	051-860-0412
울산	학생생활교육과	052-210-5267(5265)
인천	학교생활교육과	032-420-8365

지역	전담부서	전화번호
강원	교육안전과	033-258-5503
경기	학생생활인권과	031-820-0632
경북	학생생활과	054-805-3512
경남	민주시민교육과	055-268-1220
전북	인성건강과	063-237-0357
전남	학생생활안전과	061-260-0949
충북	체육보건안전과	043-290-2263
충남	체육인성건강과	041-640-7531(초중등), 041-640-7532(고등)
제주	학생생활안전과	064-710-0453

## 다. 학부모

- 평소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징후를 인지하면 바로 학교와 수사 및 지원기관에 연락을 취함
-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배포된 자료를 살펴봄
-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2차 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지지해 줌

3

[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 ]



# ③

##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

### 가. 학교장의 유의사항

- 법에 정한 신고 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나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함
-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중한 사안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원을 사건 처리 창구로 일원화하되, 업무 과중 및 교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학교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교 문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은 평소에는 학교 내 양성평등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하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엔 사안 처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사안 처리 단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나. 교사의 유의사항

- 교사는 법에 따라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감이나 교장 등 어떤 상급자도 법적 신고 의무를 제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심함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급기관 또는 여성긴급전화 (☎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에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함
- 사건을 숨기고, 피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도록 함

## 다. 학생 지도 시 유의사항

-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의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만일 주변 학생 및 학급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경우, 우선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교사는 침착하게 대응함. 성희롱·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 범죄이고 개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함
- 학교와 교사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원해주며 공감해주는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 관련 사실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려줌



4

[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



# ④

##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행위(가해)자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피해자 대상관계에 따라 다음 <표 2-3>과 같이 학교 내 담당 주관 위원회가 구분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필수로 개최되어야 함
- 교권보호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경우 필수로 개최되어야 함(교권침해와 무관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우 생략 가능)
- 선도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기능이 상이할 수 있음(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피·가해자 분리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생략 가능)
- 교육청, 학교별 일부 위원회의 명칭은 상이할 수 있으나, 그 기능을 중심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필수 설치·운영하여야 함
- 단, 학교 외부 일반인이 가·피해자일 경우에는 경찰이나 성폭력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

[표2-3] 가·피해자 대상관계별 주관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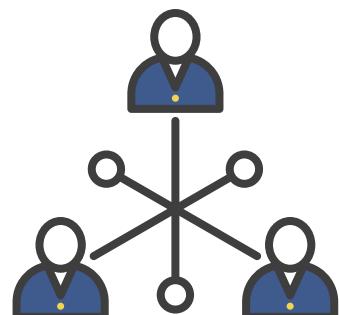
가해 피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피해교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피·가해교원)	교권보호위원회(피해교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직원·피해교원)
직원	선도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주관 위원회는 다음 <표 2-4>와 같이 구성의 법적 근거, 성격, 처리 사안 등이 달라짐
-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표2-4] 관련 위원회의 역할

기구 구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규칙	양성평등기본법,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성격	법정기구	자치기구	자치기구
처리사안	학교폭력 사안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 · 성폭력 사안

\*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 사안 처리는 수사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교는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생략 가능



5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 5

##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경우와 필요에 따라 외부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안을 처리할 수 있음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상별 관련 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과 기관별 전화번호는 다음 <표 2-5>와 같음

[표2-5] 대상별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

대상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전화번호		역할
성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대상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1899-3075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 피해자의 상담, 의료, 수사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
아동 · 청소년	해바라기 (아동/통합) 센터	서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2-3274-1375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	02-3672-0365 (위기지원) 02-735-0366~7 (상담치료)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통합)	02-3390-4145
		부산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통합)	02-2266-8276
			부산해바라기센터(통합)	051-244-1375
		대구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위기)	051-501-9117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053-421-1375

아동 · 청소년	해바라기 (아동/통합) 센터	인천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032-423-1375	
		광주	광주해바라기센터(통합)	062-225-3117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062-232-1375	
		대전	대전해바라기센터(통합)	042-280-8436~7	
		울산	울산해바라기센터(통합)	052-265-1375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1-215-1117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1-816-1374	
		경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위기)	031-874-3117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31-708-1375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위기)	031-364-8117	
		강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3-652-9840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33-252-1375	
		충북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043-857-1375	
		충남	충남해바라기센터(통합)	041-567-7117	
		전북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063-246-1375	
		전남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61-285-1375	
		경북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	054-278-1375	
		경남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	055-754-1375	
			경남해바라기센터(응급)	055-244-8117	
		제주	제주해바라기센터(통합)  통합: 064-748-5117 응급: 064-749-5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여성	여성긴급 상담전화		1366		성폭력 · 성매매 · 데이트폭력 · 사이버성폭력 · 성희롱 등으로 긴급한 구조 ·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지원

## **Ⅱ.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1

[ 학생(피해자)-  
학생(가해자) ]



①

## 학생(피해자)-학생(가해자)

2  
차  
피  
해  
방  
지

### 1단계: 성희롱 성폭력 사안 인지 및 접수

- |           |                    |            |                  |            |
|-----------|--------------------|------------|------------------|------------|
| (1) 사안 인지 | (2) 사안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3) 교육청 보고 | (4) 수사 및 지원기관 신고 | (5) 보호자 통보 |
|-----------|--------------------|------------|------------------|------------|

### 2단계: 초기 대응

- |                      |                   |
|----------------------|-------------------|
| (1) (필요시) 피해 학생 응급조치 | (2) 관련 학생 및 안전 조치 |
|----------------------|-------------------|

### 3단계: 사안 조사 및 보고

- |              |              |            |                 |
|--------------|--------------|------------|-----------------|
| (1) 사실 여부 조사 | (2) 조사 결과 보고 | (3) 보호자 통보 | (4) 자치위원회 소집 준비 |
|--------------|--------------|------------|-----------------|

### 4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              |                              |
|--------------|------------------------------|
| (1) 자치위원회 구성 | (2) 자치위원회 개최<br>(심의 및 조치 결정) |
|--------------|------------------------------|

### 5단계: 조치 결과 이행 및 사안 관리

- |             |             |           |              |
|-------------|-------------|-----------|--------------|
| (1) 조치결과 이행 | (2) 조치결과 불복 | (3) 사안 관리 | (4) 재발 방지 노력 |
|-------------|-------------|-----------|--------------|

## 가. 1단계: 사안 인지 및 접수

### (1) 사안 인지

- 피해자(학생, 보호자)가 직접 신고
- 피해자(학생, 보호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고
- 교내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
- 동료 학생이나 교직원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
- 타 기관(수사기관이나 외부 상담 등)을 통해서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적인 통로(SNS 등)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등
- 평소 교내 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성폭력 피해 발생 징후를 파악
- 사안 인지, 신고 및 피해자 통보는 현장 상황에 맞춰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

### 가·피해 사실 확인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안을 신고 받은 교원은 신고 사안의 가·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의심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사안을 접수
- 신고 받은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전문 지원기관에 문의하도록 함
- 이때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교원은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엄수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신고한 피해자와 목격자 및 관련자들에게도 비밀 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함

### Q&A 가해 학생이 먼저 사안을 알리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 신고를 받은 교사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우선하고, 해당 사안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의 신고 의무에 따라 사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사안을 최초로 전달받은 교사가 사안의 사실여부와 적절한 처리 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사 혹은 외부 전문 기관에 문의함

## (2) 사안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지 및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최초 인지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 내용을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하여 최초의 신고 내용을 보관함
- 접수 사실을 신고자, 보호자,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함

### 성희롱 피해 신고

- 성희롱의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임 구체적인 성희롱 판단 기준은 제1부 내용(7p)을 참고 함

## (3) 교육청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된 사건은 관할 교육청 양식 이용하여 서면 보고 함
- 학교장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원은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선 유선보고 후, 서면 보고 함
-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보고할 부서, 절차 및 내용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므로 성고충상담원, 학교폭력 담당 교원은 사전에 교육청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여,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4) 수사 및 지원기관 신고

- 신고는 경찰청(☎ 112),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117), 거주 지역 해바라기 아동(통합)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함
- 수사기관의 신고는 급한 경우 우선 구두나 유선 상으로 하되, 가급적 공문으로 신고하여 신고사실을 기록으로 남김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 종사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먼저 신고를 했더라도, 학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성폭력 신고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에 따라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음

###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사항

- 부모가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 신고 의무자인 학교(교장·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법적 책임을 고지함
- 신고하기 전 피해자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급적 이해시킴.
-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후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 신고를 접수한 해당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학교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함

## (5) 보호자 통보

- 가족, 친구관계 등 지지 자원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함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통보함

### 인지 및 접수 단계에서 유의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음
-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확산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교사가 개인 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 학생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 학생의 신상이 조사 과정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함
-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함

### Q&A 피해 및 행위(가해) 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

- 피해 학생과 행위(가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다를 경우, 즉 2개 이상의 학교가 관련된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 간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각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 즉, 피해 학생은 소속교에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행위(가해) 학생은 소속교에서 징계 조치를 받도록 함. 이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대방 소속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학교 간 협의 하에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나. 2단계: 초기 대응

### (1) (필요시) 피해 학생 응급조치

- 피해 학생은 필요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며,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나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함
- 응급이송 시 보건교사 또는 피해 학생과 동일한 성을 가진 교직원 동행
- 상처 확인 및 치료를 위해 보건실 치료 시, 치료 기록을 관리
- 병원 진찰 과정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한 교사는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 사안 발생 현장이 교내일 경우, 사안을 신고 및 접수 받은 교사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
- 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을 경우 CCTV 화면을 확보

### (2) 관련 학생 분리 및 안전 조치

-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
- 피해 학생이 행위(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
- 피해 사실과 피해자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비밀누설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 학생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전문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 센터 등, 외부 전문 지원기관에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부득이한 결석, 조퇴를 허용함. 피해자가 치료 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80호) 출결상황 관리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
- 사건에 대해 조사 할 때,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음

- 사건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교원은 피해 학생의 평상시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사건 처리 중에 있거나 종결된 후 시설 입소 후 전학 온 학생 등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배려를 제공함

### 피해 학생과 행위(가해) 학생 분리

- 피·가해자 분리 조치는 최우선적인 처리사항으로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안정,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인권보호 등에 주안점을 둠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전학 강요 등 일방적인 조치는 지양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기급적 수렴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협의하여 학교생활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함

###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시 유의사항

- 사안이 처리되는 동안 피해 학생이 학교 내에서 행위(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원하는 경우, 행위(가해) 학생에 대해 '제 6호 출석정지'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대안교실, 상담실 등을 통한 피·가해자 분리를 통해 해당 조치를 대체할 만한 방안 고려 가능

###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 사안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이외의 사람에게 사안 관련 철저히 비밀 유지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함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이외에 목격자 등, 관련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성을 고지함

## 다. 3단계: 사안 조사 및 보고

### (1) 사실 여부 조사

#### (가) 관련 학생 조사 및 피해 사실 확인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의 접수 내용을 확인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피·가해 내용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안 처리 관련 서식 등을 활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 정도, 피해 지속 시간, 현재 상태, 관계, 또 다른 가해자 및 피해자 여부,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 여부, 긴급피임 여부, 신고 및 고소 여부 등을 파악
- 이때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발생 날짜, 시간, 장소 등)에 중점을 두지 않음
- 피해 학생 조사 시 가급적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동석시켜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함
- 피해자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며 피해자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기록(녹음 등)
-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조사 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
-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 목격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를 확인

#### (나) 증거 확보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안은 인지 수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학교전담경찰관) 신고와 동시에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이루어짐
- 사안이 성폭력(성폭행)일 경우 사안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교원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원은 사안이 교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수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음
-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법적 증거물을 채취해 두도록 권함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음)

## **(2) 조사 결과 보고**

- 최초 면담 일지 및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함
- 학교장은 성폭력 사안의 조사 결과를 시·도교육(지원)청의 담당부서에 보고함(시·도교육청별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미리 확인해두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개최 예정일을 보고함

## **(3) 보호자 통보**

- 사안 조사 결과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함

## **(4) 자치위원회 소집 준비**

- 자치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자치위원들에게 전달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들을 'A', 'B' 학생 등으로 익명처리함
- 단, 학교장은 시험 등 학사일정,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7일 이내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사실 관계가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은 사안의 관련성에 의해 제척되거나 신고인과 위원 간의 기피 신청 및 회피 가능함
- 관련 학생 측이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발생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행위(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4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sup>1)</sup>

### (1) 자치위원회 구성

- 각급학교 자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자치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함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참조

### 자치위원회 개최 시 유의사항

- 성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위(가해) 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 사실이 접수된 경우에도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이 충족 되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피해 학생 측이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단, 가해 학생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개최 필요)
-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개최해야 함(7일 범위내에서 개최 연기 가능)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8)'를 참고: [http://www.edunet.net/nedu/doran/selectDoranBoardForm.do?boardNum=1&menu\\_id=142&atclNum=9509#](http://www.edunet.net/nedu/doran/selectDoranBoardForm.do?boardNum=1&menu_id=142&atclNum=9509#)

### [표2-6]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담당업무별 교사들이 해야 할 일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가해 · 피해) 학생 면담</li> <li>주변학생 조사</li> <li>설문조사</li> <li>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li> </ul>
사안내용 검토 및 처리방향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게 보고</li> <li>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경찰서에 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참고</li> <li>자치위원회 개최시기 결정</li> <li>필요시 피 · 가해 학생 긴급 조치</li> </ul>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성폭력 사안의 경우 담당경찰관 참석 권장)</li> <li>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7일 이내 연기 가능)</li> <li>자치위원회 회의 소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li> <li>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li> <li>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li> <li>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li> <li>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li> <li>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ul>
가해 학생 ·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의견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대면접촉이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 출석 가능</li> </ul> <p>※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진술로 대체하거나, 수사기관 사건 담당 경찰, 상담기관 상담원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p>
자치위원회 심의 및 분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 필수절차가 아님 특히, 성범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임</li> </ul>
피해 ·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이행</li> <li>조치 거부나 회피 시 관련법에 따른 징계 또는 재조치</li> <li>교육감에게 결과 보고</li> </ul>

〈출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8)

## **(2) 자치위원회 개최(심의 및 조치 결정)**

### **(가) 준비 단계**

- 자치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자치위원들에게 전달
- 피해·행위(가해) 양측의 대면접촉이 상호간에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 시간 및 장소 분리
- 피해·행위(가해) 양측이 모두 출석하는 경우, 대기 시간 및 장소 분리
-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관련자 진술서, 증거자료의 사본 준비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모든 자료는 김00 또는 A학생 등 익명처리 필수
- 모든 자료는 회의 현장에서 배포

### **(나) 개최 단계**

- 참석자 전원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함  
(서약서 작성)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 등을 확인
- 피해·행위(가해) 측이 대기 상태에서 진행(진술 시에만 참석, 서면 진술 가능)

### **(다) 사안 조사 결과 보고**

- 사안 조사 내용, 피해·행위(가해) 측 주장과 현재 상태, 특이 사항 등(교육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에 대하여 보고
- 피해·행위(가해) 측에게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안 조사 결과와 함께 반드시 보고

### **(라) 피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해 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
- 피해 학생 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 진술(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

-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의 담당자가 동석할 수 있음(예시: 상담기관 상담원, 수사기관·사안담당경찰관)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

#### (마) 가해자 사실 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을 확인하고 행위(가해) 학생의 입장을 말함
- 행위(가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함
- 위원들은 가해 학생에게 질문하고 가해 학생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함
- 조치결과 서면 통보(등기우편)를 위한 주소를 확인하도록 함

#### (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교육 조치 심의

-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대하여 논의
-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를 논의하고 심의
- 사안의 경중, 피해자 상태, 행위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치합의를 도출

#### (사) 조치 결정

-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
- 보호 조치 및 선도·교육 조치 결정

###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행위(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행위(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 행위(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아) 폐회

-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

-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임. 다만, 피해 학생, 행위(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피해·행위(가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자치위원회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 (자) 결과 통보 및 교육청 보고

-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
- 결과통보시 피해 및 가해측에 재심 등의 절차를 안내
- 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
- 조치 거부나 회피시 관련법에 따른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보고

[표2-7]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

구분		내용
피해 학생	안전여부 확인 (긴급 보호 조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 상태가 안정적인지 확인</li> <li>지속적인 성폭력, 협박 또는 보복행위 등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li> <li>긴급보호조치 범위는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6호)임</li> </ul>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과 지지하기,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도록 유의</li> <li>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후유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관 안내</li> <li>외부 전문 기관 안내</li> </ul>
	제2호 일시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인 성폭력, 협박 또는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외부 전문 기관이나 학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li> </ul>
	제3호 치료 및 치료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li> </ul>
	제4호 학급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적 상처 등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li> </ul>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학생 측이 원하거나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등·하교 시간 조정 등)</li> </ul>
긴급 보호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 보호 조치 시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li> <li>긴급 보호 조치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 가능</li> </ul>

		긴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은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 가능</li> </ul>
행위 (가해 학생)	제1호	서면 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li> </ul>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성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li> </ul>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li> </ul>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조치</li> </ul>
	제6호	출석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 학생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li> <li>아래의 경우 행위(가해) 학생 우선 출석정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사한 경우,</li> <li>②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성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li> <li>행위(가해) 학생 측에 의견제시 기회 주어야 함</li> <li>출석정지 기간 중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li> </ul>
	제7호	학급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li> </ul>
	제8호	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li> <li>가해 학생이 다른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함</li> </ul>
	제9호	퇴학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li> </ul>
		긴급 선도·교육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조치 시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li> <li>행위(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li> </ul>
피해·행위(가해) 학생 포함한 관련자 모두 분리·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함</li> <li>피해 학생 2차 피해 예방</li> <li>관련자 간의 증거인멸시도 예방</li> <li>관련 학생을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과 같이 있다가 보호자 인계 등의 후속 조치까지 모두 분리하되 빈 공간에 혼자 두지 않음</li> <li>사안 확인을 위하여 피해·행위·목격 학생을 대면시키지 않음</li> </ul>

## 마. 5단계: 조치 결과 이행 및 사안 관리

### (1) 조치결과 이행

-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는 우편으로 보호자에게 송달
- 조치결과통보서는 학교장 명의의 문서이며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계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7일 내에 집행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임
- 행위(가해) 학생 선도조치의 집행은 14일 이내 집행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
- 조치 이행 거부 또는 기피 시 추가 조치 가능함
- 행위(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 조치결과 불복

#### (가) 재심

- 피해 학생의 재심청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함
- 가해 학생의 재심청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전학, 퇴학조치에 한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함

#### (나) 행정심판

- 가해 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함

#### (다) 소송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은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 학교장의 조치,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3) 사안 관리

- 관련 전문 기관 연계하여 피해·행위(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상담 및 교육
- 피해 학생 측이 제시하는 회복 방법을 최대한 수용 (예시: 심리상담 기관 선정)
- 비용 지원
- 행위(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조치 중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는 성교육·성폭력 전문 기관·전문가에게 의뢰

#### 사안 관리 시 유의사항

-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상황(환경, 정서 등)을 고려하여 회복을 위한 과정과 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피해 지원자들에게는 피해자의 내면에 있는 치유를 향한 강한 힘과 용기, 지혜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됨. 행위 학생의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교육 및 상담 치료 이수'를 진행하도록 함

#### (4) 재발 방지 노력

-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으로 학기 초인 3, 4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권장
-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2

[ 학생(피해자)-  
교직원(가해자) ]



## ②

# 학생(피해자)-교직원(가해자)



2  
차  
피  
해  
방  
지

## 가. 1단계: 사안 인지 및 접수

### (1) 사안 인지

- 피해자(학생, 보호자)가 직접 신고
- 피해자(학생, 보호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고
- 교내 실태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
- 동료 학생이나 교직원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목격하여 신고
- 타 기관(수사기관이나 외부 상담 등)을 통해서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적인 통로(SNS 등)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경우 등
- 평소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성폭력 피해 발생 징후를 파악해야 함
- 사안 인지, 신고 및 피해자 통보는 현장 상황에 맞춰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

#### 유의사항

- 교원이 가해자일 경우 학생들이 동료 교사인 담임이나 보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학생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

### (2) 사안접수

- 사안인지 즉시,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행위(가해) 교직원은 성고충 상담창구<sup>2)</sup>에 접수
- 모든 접수 사안은 접수대장에 기록으로 남김

### (3) 교육청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된 사건은 관할 교육청 양식 이용하여 서면 보고함
- 학교장이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성고충상담창구의 담당 교원은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선 유선보고 후, 서면 보고
-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2) 성고충상담창구 인원 구성 및 역할은 본 보고서 66쪽을 참고

-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 시 지역에 따라 보고 부서 및 담당자가 다르므로 사전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
-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서식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함

#### (4) 수사기관 및 지원 기관 신고

- 신고는 경찰청(☎ 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117), 여성긴급 상담 전화(☎ 1366), 거주 지역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함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신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부과대상).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5) 보호자 통보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통보

### 나. 2단계: 초기 대응

#### (1) (필요시) 피해 학생 응급조치

- 필요시 피해 학생이,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응급이송(안전신고센터(☎ 119),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여성 긴급 상담전화(☎ 1366)시, 보건교사 또는 피해 학생과 동일한 성을 가진 교직원 동행
- 교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을 경우 CCTV 화면 확보
- 피해 학생의 상처 확인 및 치료를 위해 보건실 치료 시, 치료 기록을 관리
- 병원 진찰 과정은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한 교사는 왜 병원에 왔는지, 진찰을 받고 나면 어떤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 (2) 피해 학생 안전조치

-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 보호 조치
- 피해 학생이 행위(가해)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파악
- 피해 학생이 다수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경우 보호
- 피해 사실과 피해자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
-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부득이한 결석, 조퇴를 허용함. 피해자가 치료 받는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출결상황 관리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으로 인정
- 선불리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음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 유의 사항

- 학생-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야 함. 그러나 사안에 따라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방식을 달리 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담임일 경우 가해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중등의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이나 수업을 담당하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 사안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이외의 사람에게 사안 관련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 2차 피해를 예방
- 피해 학생과 행위(가해)교직원 이외에 목격자 등, 관련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을 고지
-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성희롱 사안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등 유의

## 다. 3단계: 사안 조사 및 보고

### (1) 관련자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성고충상담창구 담당 교사는 최초 인지 교직원의 사안 접수 내용 확인
- 피해 학생과 행위(가해)교직원 면담 시 육하원칙에 맞게 사실 조사
- 전수 조사 후 피해 학생이 다수인 경우, 사실 확인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 학생들을 다른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조사
- 조사 받은 관련자들이 조사 내용을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시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표2-8] 대상별 조사 주체 및 조사내용**

대상	주체	조사내용
피해 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학생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말 등을 조사, 기록</li> <li>•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 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li> <li>•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동성(同性)의 상담자와 상담</li> <li>• 행위 교직원에 대한 요구 사항 파악(사과, 징계 등)</li> </ul>

행위 교직원	성고충상담창구/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 교직원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기록</li> <li>•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 기간, 행위 횟수, 행위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li> <li>•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li> </ul>
목격자 등 제3자	학교폭력 전담기구·소속교원/ 성고충상담창구·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 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li> <li>•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li> </ul>

※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서도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교직원들을 조사하며, 학교는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설문 시 고려사항

- 교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안의 사실 여부 파악 혹은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외부기관(교육청, 수사기관, 전문 기관 등)에 설문조사를 위탁할 수 있음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명으로 응답하여야 사안이 실제로 조사·수사로 이어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설문 도입부에 명시

### (2) 조사 결과 보고

- 조사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여 보고
- 사안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추후 자치위원회의 보고 자료, 사안 심의·조치의 근거 자료, 교육청 보고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3) 보호자 통보

- 사안 조사 결과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도 통보하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함
- 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함

#### **(4) 자치위원회/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자치위원회/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행위자, 자치위원/심의위원에게 전달함
- 서면 출석요구서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학생’, ‘B 교직원’ 등으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함
- 단, 피해 학생이 원치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 개최는 생략 가능

### **라. 4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 **(1) 자치위원회/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학생 대상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 자치위원회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므로 자치위원회(피해 학생)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행위 교직원)를 개최해야 함
- 각 위원회 별 구체적 진행 절차는 45쪽(자치위원회)과 71쪽(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을 참고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이 원하는 보호 조치 방식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가해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함
- 피해 학생 측이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보호자 동의 필수)
-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개최해야 함
- 단, 학교장은 시험 등 학사일정,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7일 이내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사실 관계가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 가능

#### **유의 사항**

-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재심 등 불복 절차 안내,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함
-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집행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임

## (2) 행위(가해)교직원에 대한 조치

- 서면 사과
- 피해자 및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수업배제, 업무배제 및 수사기관 통보 시 직위해제 등
- 특별교육 이수
-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 학교장에 의한 인사 조치(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경우)
-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인사 조치 건의(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경우, 아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참고)
- 수사기관 추가 신고

## **마. 5단계: 조치 결과 이행 및 사안 관리**

### (1) 조치 결과 이행

-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사항에 대해 피해 학생 측에 조치결과통보서 송달
-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재심 등 불복 절차 안내,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
-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집행은 7일 내에 시행해야 함
- 학교장은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행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신청
- 행위(가해)교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소속 교육청에서 처리됨. 단, 학교장의 인사재량권이 있는 교직원(예를 들어 기간제교원, 방과후 강사 등)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인사 조치'라면 학교장의 임용권에 따름

### (2) 조치 결과 불복

- 조치결과 통보 시, 재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

#### **(가) 재심**

- 피해 학생의 재심청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

#### (나) 행정심판

- 피해 학생은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함
- 행위(가해)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 행위(가해) 직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교육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 (다) 행정소송

- 피해 학생이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장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위(가해) 교직원이 소청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3) 사안 관리

- 관련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피해 학생과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제공
- 피해 학생 측이 제시하는 회복 방법을 최대한 수용(예시: 심리상담 기관 선정)하도록 함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1호)의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 이용 시 비용을 지원
- 학교장은 행위(가해) 교직원 조치 이행을 관리 및 감독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만전을 기함

### (4) 재발 방지 노력

- 학생 치유 활동,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 단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교단 복귀 시에는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성인지 교육 및 개별 상담 실시 의무

3

교직원(피해자)-  
교직원(가해자)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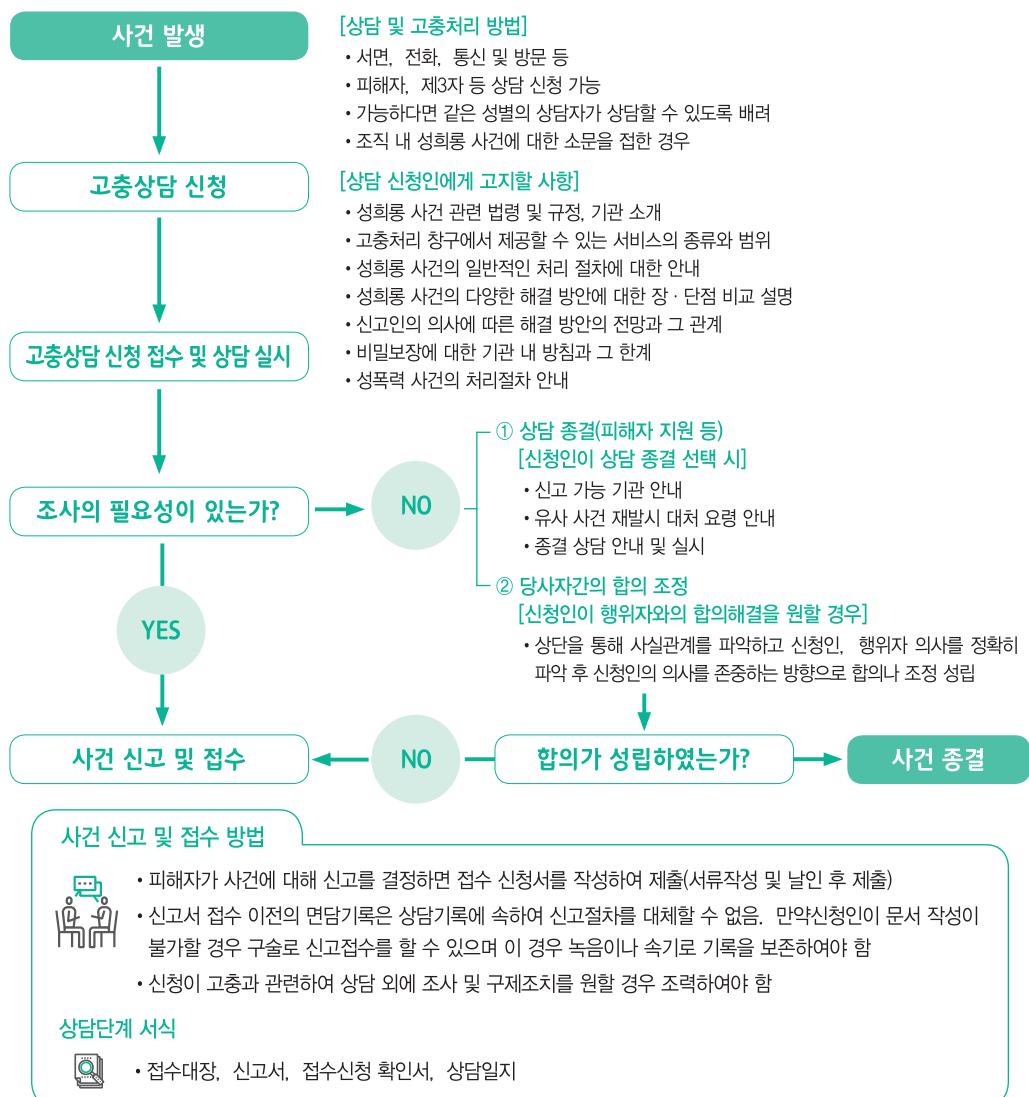
## 교직원(피해자)-교직원(가해자)



2  
차  
피  
해  
방  
지

- 교직원 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예시: 폭행이나 혐박 등을 사용하여 강간, 강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므로 학교 측의 신고 의무는 없음
- 교원 간 성희롱 사안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요구 등에 따라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초기에 종료될 수 있음
- 피해자가 성고충상담원에 상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 [표2-9]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출처〉 여성가족부(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 가. 1단계: 사안 인지 및 접수

### (1)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 상담 신청

- 피해 교직원 또는 그 대리인은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교내 성고충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 피해 교직원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에 직접 상담·신고 가능
- 이 외에도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 기관을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표2-10] 성고충상담원 역할 및 구성요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 행위자 교직원 상담</li> <li>•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 및 심의 절차 진행 여부 판단</li> <li>• 피해자가 원할 경우 조정 및 중재</li> </ul>
구성요건(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각각 1인 이상 교원을 성고충 상담원으로 지정</li> <li>• 성인지적 태도를 갖추고 있어서 사안 처리에 적극적인 교원</li> <li>• 성희롱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원</li> <li>•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교원</li> <li>• 공정한 판단 능력과 태도를 갖춘 교원</li> <li>• 성고충 상담원이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합의 중재가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를 권장함</li> </ul>

### 교직원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방법

- 학교 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내부 절차 진행
- 지원청 및 시 · 도교육청 (교육청) 신고
- 당사자 간 합의
-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 기관 이용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민 · 형사 소송 청구

### 교직원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은 은폐·축소되기 쉽고 이로 인하여 재발하거나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학교장과 성고충상담원의 사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
- 학교 내 교원 성비위 관련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축소 시 관련자는 최고 파면하고 징계 사유에서 제외
- 성고충상담원이나 학교장이 사안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을 통해서 처리함
- 교직원 간 성희롱 사안일 경우 학교 내부의 성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교내 창구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소송 등으로 진행 가능
- 비정규직 교직원이 관련되어 있을 때 비정규직 피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안이 은폐·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함
-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기관 내부 징계는 해당 사안의 수사기록 등을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함
- 다만, 신체접촉의 경우 성희롱과 성폭력(강제 추행 이상) 구별이 불명확하므로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2) 신청 접수 및 상담 실시

#### (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상담을 통해서 공식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성희롱 사안에 대한 접수 신청서를 작성함 이때 신고는 성희롱고충상담 신청서에 날인 후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신고서 접수 이전의 사안 관련 면담기록은 상담기록에 속하며 신고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음
-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담원 참관 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
- 성고충상담 신청서에 피해자가 서명을 하여 성고충상담창구에 제출

### 참고 사항

- 교육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2015년) 관련 계획에 근거하여, 교직원간의 성비위 사건도 지원청 및 시 ·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 기준에 따라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 가능
- 원칙적으로는 성고충 상담창구에 신고 및 접수된 모든 교원 간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청 및 시 · 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함. 그러나 피해 · 행위(가해)자간 사안 발생 즉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나 성고충상담창구에 단순 상담을 한 경우에는 상급자(학교장)나 지원청 및 시 · 도교육청 신고는 의무는 아님
- 만약 피해자가 지원청 및 시 · 도교육청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상담 내용의 누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담록에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두도록 함

#### (나) 피해 직원이 행위(가해) 교직원과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행위(가해)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 행위(가해) 교직원의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
- 성고충상담창구의 중재로 당사자 간 화해

### 화해를 위한 중재 시 주의 사항

- 중재과정에서 행위(가해)교직원과 피해 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 성급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행위 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도록 함
-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피해 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 (3)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

- 교원간의 사안은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 해야 함

### 행위(가해)자가 학교장일 경우

- 교원 간 성비위 사안에서 학교장이 행위자일 경우,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이나 외부기관(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을 통해 사안을 신고하고 처리

## 나. 2단계: 초기 대응

### (1) 긴급조치

- 피해 교직원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지 안전여부 확인
- 필요 시 행위(가해) 교직원 긴급격리 조치

### (2) 피해 교직원 지원

- 피해 교직원 중심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
- 예를 들어 필요시 응급 처치를 받으며,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두려움 극복, 감정조절, 불안 완화 등을 상담을 통해 지원
- 응급한 경우 학교장은 성고충상담원과 협의하여 피해 교직원을 긴급 보호 조치 하며, 성희롱·성폭력 전문 기관(예: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등)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음

###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 사안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이외의 사람에게 사안 관련하여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
-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지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 다. 3단계: 사안 조사 및 보고

### (1) 관련자 사안 조사 및 증거 수집

- 조사는 피해 교직원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됨
-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 관련자 사안 조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가능
- 사안 조사는 피해 교직원, 행위 교직원, 목격자 등에게 진술 및 서면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발생 현장 확인 및 관련 증거를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파일 등) 수집할 수 있음
- 다수 교직원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조사(관련자 공모 예방 차원에서 가능한 하루를 넘지 않도록 함)
- 조사위원회는 진행상황을 피해 교직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줌
-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으면 경찰서에 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참고

####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 피해 교직원이 원할 경우 고충 상담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
- 피해 교직원이 행위 교직원에게 원하는 것(예 : 서면사과, 공개사과, 전보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 행위(가해)교직원과 상담 시, 행위(가해)교직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
- 행위(가해)교직원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와 언행을 유지
- 피해 및 행위 교직원 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로부터 목격담을 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

### (2) 조사 결과 보고

- 성고충상담원은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첨부하고 사건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장은 성폭력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
- 성폭력 고충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 **(3) 조치결정을 위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심의위원에게 서면으로 개최 예정 통보
- 피해·행위(가해) 교직원 개최일에 출석을 통보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B' 교직원 등으로 익명으로 처리

## **라. 4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 **(1)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명한 사람(일반적으로 교감)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성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학교장 포함 3인으로 구성 가능(단, 학교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 외부 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반드시 위촉해야 함
- 학교장이 가해자일 경우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조사 및 징계 결정 등을 처리

###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주의사항 안내**

-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방법, 의사 · 의결 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 신고인과 위원 간 기피 신청 및 회피 가능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
-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하나의 제안을 하기보다는 여러 제안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진행함

## (2)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유형을 판단하고 사안의 경중을 결정
- 피해자와 행위자 간 재발 방지 약속, 각서 등의 조정
-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수립

### 유의 사항

- 강제 추행 등 중대한 성폭력 사안을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안을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은 관리자로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될 수 있음

[표2-11] 교직원간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구분	조치사항	비고
피해 교직원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리상담 및 조언</li> <li>2. 일시보호</li> <li>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li> <li>4. 부서 전환</li> <li>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처리 할 수 있음</li> </ul>
행위 교직원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면사과</li> <li>2. 피해자 및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li> <li>3.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li> <li>4. 부서전환</li> <li>5.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li> <li>6. 인사 조치</li> <li>7.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li> <li>8.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 교직원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의하여 의결</li> <li>• <b>인사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전보나 계약 해지 및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음.</li> <li>- 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교직원의 경우 상급 기관에 인사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li> <li>- 사안이 위중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가능</li> </ul> </li> </ul>

## 마. 5단계: 조치 결과 이행 및 사안 관리

### (1) 조치 결과 이행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사항에 대해 피해·행위 측에 조치결과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함
-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함
- 학교장은 피해 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가해교직원과의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2) 조치 결과 불복

- 내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제기 등이 가능하며, 이를 피해 교직원 및 가해 교직원에게 자세히 안내함

### (3) 사안 관리

- 피해 교직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 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 학교장은 피해·행위 교직원에 대해 조치 이행 관리 및 감독함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만전을 기함

### (4) 재발 방지 노력

- 학생 치유 활동,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 단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교단 복귀 시에는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성인지 교육 및 개별 상담 실시 의무
-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 초인 3, 4월에 실시 권장(신입 교직원의 경우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피해 교직원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위 교직원에게 전보조치 또는 재발 방지교육, 특별 교육 및 상담 치료 등을 이수 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학내 상담 창구 안내와 비밀 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함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상시 게시함
- 별도로 성폭력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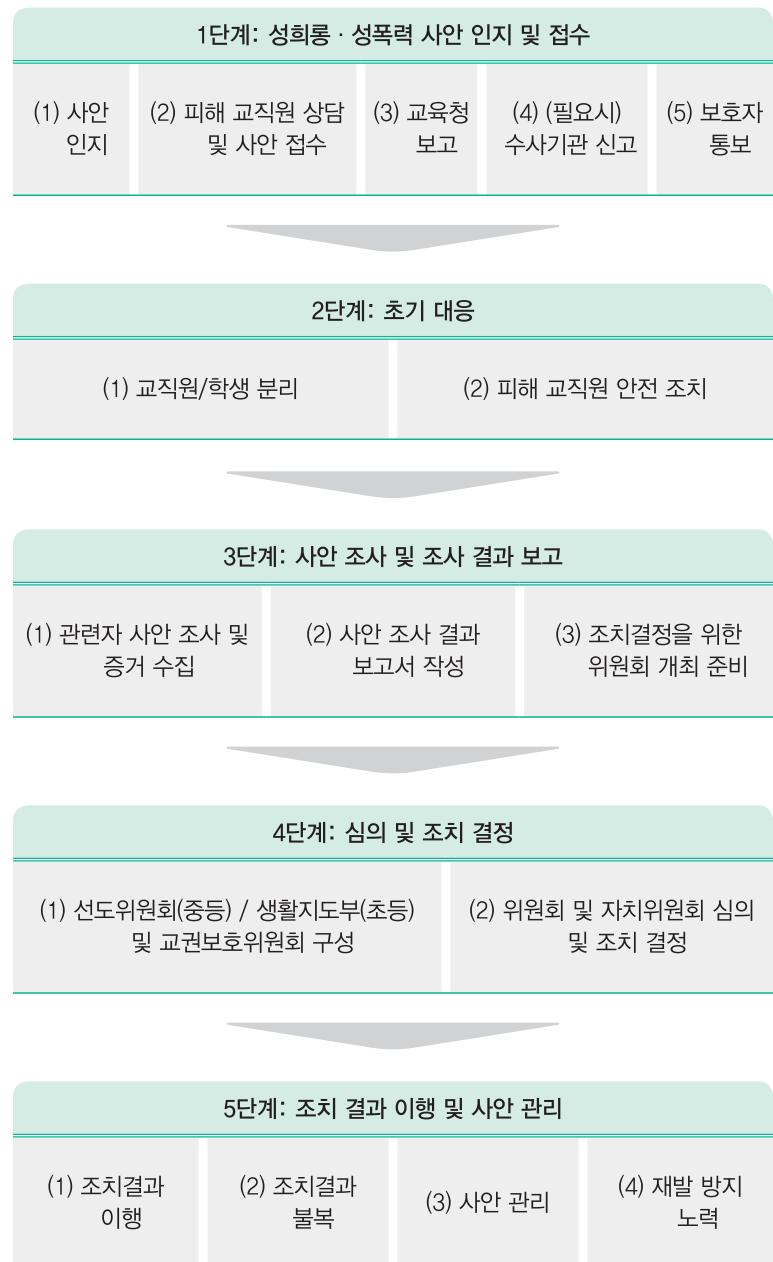
4

교직원(피해자)-  
학생(가해자)



# ④

## 교직원(피해자)-학생(가해자)



2  
차  
피  
해  
방  
지

## 가. 1단계: 사안 인지 및 접수

### 참고사항

- 행위(가해) 학생의 선도·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 조사 및 조치 결정
-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일반적으로 교직원은 성고충상담창구 접수 후,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 단위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 조사 및 조치 결정
- 최근 학생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나 예방교육을 권장
-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학생 성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담당 교원과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효과적

#### (1) 사안 인지

- 사안 발생 징후를 인지하거나, 실태조사와 상담 등을 통해 사안 인지
- 학생은 선도위원회에, 피해 교직원 또는 대리인이 성고충상담창구 또는 상담원에게 상담 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함
- 사안 인지, 신고 및 피해자 통보는 현장 상황에 맞춰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

#### (2) 피해 교직원 상담 및 사안 접수

- 피해자는 사안 접수 전에 성고충상담원과 상담 가능
- 접수 전의 상담 과정이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기록하여 문서화 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이 사안 접수 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희롱 사안 처리의 첫 단계로 간주됨
- 피해 교직원이 신고 및 접수를 거부할 경우라도 신고 및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담록에 기록하고 피해 교직원의 서명을 받아 둠
- 상담을 통해 성고충상담원은 공식적인 사안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
- 성고충상담원이 공식적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사안 접수

### (3) 교육청 보고

- 조사한 내용을 교육청에 서면 보고(교육청 양식 이용)
-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유선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서면 보고
- 가급적 사안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 보고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고할 부서는 교육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 (4)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

- 필요시, 혹은 피해 교직원이 요청할 시에 수사기관(경찰청, ☎112)이나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117), 또는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에 신고

### (5) 보호자통보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행위(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행위(가해) 학생의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안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라도 종료 가능
- 그러나 너무 성급한 합의·중재 시도는 사안 처리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설불리 시도하지 않음

## 나. 2단계: 초기 대응

### (1) 교직원/학생 분리

- 피해 교직원, 행위(가해) 학생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분리·보호하도록 함  
이는 피해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임
- 또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행위자, 목격자를 대면시키지 않기 위하여 분리 조치를 취함

### (2) 피해 교직원 안전 조치

- 피해 교직원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 다. 3단계: 사안 조사 및 보고

### (1) 관련자 사안 조사 및 증거 수집

-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의 접수 내용을 확인
- 필요시 사안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 파일 등) 수집함
- 육하원칙에 따라 행위(가해)학생과 피해 교직원을 조사
-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이들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분리하여 조사
- 사안 조사 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의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안 처리가 다른 관계유형에 비해서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유의

#### (가) 피해 교직원 면담 및 조사

- 성고충상담창구나 상담원이 피해 교직원을 면담하여 조사
- 피해 교직원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하여 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 기간, 행위 횟수, 행위 정도를 모두 조사하여 기록함
-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요구 사항(사과, 징계 등)을 파악

#### (나) 행위(가해) 학생 조사

- 행위(가해) 학생 조사는 학생생활지도부나 선도위원회에서 진행
- 행위(가해) 학생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하여 기록함
- 사실 확인을 위해 행위(가해) 학생과 피해 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은 피하고, 2인 이상의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강압 및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함

## **(2)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육하원칙에 따른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사안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추후 선도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보고 자료, 사안 심의·조치의 자료, 교육청 보고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3) 조치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준비**

-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한 선도위원회를 개최
- 선도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선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학생’ 등으로 익명 처리
-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결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결정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교권보호 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서면으로 관련 교원, 위원들에게 전달
-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학생’, ‘B 교직원’ 등으로 익명으로 처리

## **라. 4단계: 심의 및 조치결정**

### **(1) 선도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는 상동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아래 내용을 참고

##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이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국립학교 해당)이나 교육감(공립, 사립학교 해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개최
  -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고인과 위원간 기피 신청 및 회피 가능
  -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및 주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진행 절차를 준용하여 회의를 진행
  -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림.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도록 안내

## (2) 위원회 및 자치위원회 심의 및 조치 결정

-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심의 및 조치 결정
- (교권보호위원회/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피해 교직원과 행위(가해) 학생 간의 조정, 화해, 고발, 권고 조치 등

## 유의 사항

- 피해 교직원 보호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 혹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교직원에 대한 조치 권고사항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병과 적용할 수 있음
- 행위 학생 선도 · 교육 조치 중 3.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함
-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장 추천 전학이 가능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참고)

**[표2-12] 학생(가해)-교직원(피해) 사안 발생 시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비고
피해 교직원 보호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전근(전보) 3. 일시보호 4.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5. 부서 전환 6.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담임 배제, 수업 담당 학급 배제, 수사기관 신고 등)	
행위(가해) 학생 선도·교육 조치	1. 학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필수) 4. 출석 정지 5. 퇴학처분(고등학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가해) 학생: 자기 이해, 대인관계 능력 증진,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 · 스트레스 해소 방법</li> <li>-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련된 사항</li> </ul> </li> </ul>

## 마. 5단계: 조치 결과 이행 및 사안 관리

### (1) 조치결과 이행

- 위원회의 조치 결정사항에 대해 피해·행위 측에 조치결과통보서 송달
-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재심 등 불복 절차 안내,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함

### (2) 조치 결과 불복

- 조치결과 통보 시 재심,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
- 피해 교직원은 조치에 불복시 수사기관에 사안을 신고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시할 수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불가능, 민사소송만 가능

#### (가) 재심

- 행위(가해) 학생이 선도위원회의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징계조정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가능
- 이 경우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기한은 교육청별로 확인이 필요

#### (나) 행정심판

- 행위(가해) 학생은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행정소송

- 행위(가해) 학생은 재심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
- 학교장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 가능

### (3) 사안 관리

- 관련 전문 기관 연계하여 행위 학생 또는 보호자 상담 및 교육을 시행
- 행위(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는 관련 전문 기관·전문가에게 의뢰 권장

### (4) 재발 방지 노력

-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학기 초인 3, 4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등 실시 권장
- 성폭력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상담 창구 안내와 비밀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함
-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게시판에 상시 게시함

# 5

## [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사례 ]



# ⑤

##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사례

### 가. 학생(피해자)-학생(가해자)

**사례** OO 고등학교의 A양은 남자친구 B군과 6개월 정도를 교제하고 헤어짐. 어느 날 A양의 학급 친구인 C양은 자신의 남자친구의 D군의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B군이 올린 A양의 주요 신체부위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함. C양은 혼자서 고민하다 이를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놓음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1 단 계	<p>① 상담교사는 상담을 한 C양과 상담을 하며 사안을 인지하게 됨</p> <p>② 상담교사는 C양에게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함</p> <p>※ 신고한 학생이 용기를 낸 것에 대해 칭찬하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할 경우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적절하게 대처해주고 목격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함</p> <p>③ 상담교사는 피해 학생을 따로 불러 사안에 대해 알려주고, 신고 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함</p>	<p>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교사가 C양과 A양을 동시에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함</p> <p>② D군을 불러 핸드폰을 압수하고 채팅방의 내용을 확인함</p>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1 단 계	<p>④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접수된 사안은 교육청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 보고함</p> <p>※ 상담교사를 포함한 사안 처리 담당 교사들은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향후 사안 처리 절차와 진행방식, 가능한 결과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p> <p>※ 전문적 지원이나 판단이 필요하다고 교사가 판단하거나,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외부 전문 기관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등)의 도움을 요청함</p>	<p>※ 이러한 행위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피해자와 목격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p>
	<p>① 피해 학생이 심리·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상담교사나 외부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p> <p>②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들 (B군과 채팅방에 참여한 학생들)을 피해 학생과 분리함</p> <p>③ 관련자(피해자, 행위자, 목격자)들에게 비밀누설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함</p> <p>④ 채팅방의 채팅 내용을 화면캡쳐 할 수 있으면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이후 제출함</p>	<p>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학기 중이고, 아직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이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B군과 채팅방에 적극 참여한 학생)의 등교를 허락하고 피해자와 같은 반에서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함</p>  <p>※ 이러한 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이 처리되어야 함</p>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3 단 계	<p>① 학교장은 조사 책임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에게 조사를 담당하도록 함</p> <p>②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 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li> <li>- 피·가해 학생 심층면담</li> <li>-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li> <li>- 성폭력의 경우 비밀 유지에 특별히 유의</li> </ul>	<p>① 가해자의 부모와 변호사가 학교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p> <p>※ 이러한 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성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이 처리되어야 함</p>
4 단 계	<p>① 자치위원회 개최</p> <p>※ 사례는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폭력이며, 사이버 폭력임. 성폭력의 경우, 특히 사이버 폭력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치위원 중 외부위원으로 섭외하도록 함. 만약 자치 위원으로 섭외가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으로 참여 섭외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심의 및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p> <p>②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피·가해자에 대한 조치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 불면증을 호소하여 3호조치(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내림.</li> <li>-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치료 및 요양비용 지불을 거부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6항)</li> <li>- 가해자들은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3호(학교 내 봉사),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와 병행하여 5호조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결정</li> </ul>	<p>①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대표를 임의로 선출함</p> <p>※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할 경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위반사유가 됨.(선출절차 생략, 위원 제척 미이행 등)</p> <p>② 피·가해 학생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을 신청하여 피·가해자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위원들의 성명이 포함된 회의록을 제공함</p> <p>※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회의록 제공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p>

5 단 계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p>① 피·가해자가 조치 결정을 수용할 경우 그대로 이행</p> <p>② 피·가해자가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송(민사소송) 등 가능</p>	

## 나. 학생(피해자)-교직원(가해자)

**사례** OO 고등학교 교사 A는 교내 연극부 담당이다. A교사는 연극 지도를 한다면서 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역할에 몰입하려면 찐하게 남자를 사귀어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또한 연극 작품을 선택할 때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작품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교사 학교에 근무한 5년 동안 아무도 이러한 A교사의 언행과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그러다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A교사의 사안이 익명으로 한 SNS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해당 SNS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이 사건이 학교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 적절한 처리 예시

- 1 단계
- ① 이 사례는 언론이나 SNS를 통해 사안이 인지된 경우임
  - ②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성고충 상담창구, 수사기관에 신고함
  - ※ 피해 사실 확인, 가해교직원 특정, 수사 기관 신고 등을 위해 전수 조사 실시 가능
  - ③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로 수사기관에도 신고함
  - ④ 사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청에도 보고함
  - ※ 언론이나 SNS를 통해 사안이 공개될 경우, 누구나(교사, 학생, 학부모, 혹은 학교장) 신고자가 될 수 있음. 학교장 본인이 사안을 인지하였거나,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직접 사안을 보고하였어도, 학교폭력전담기구와 성고충상담창구에 공식적으로 신고 · 접수함
  - ⑤ 외부 전문 기관(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음

### 부적절한 처리 예시

- 
- ① SNS에 사안이 알려지자 학교장은 학교의 위신이 떨어질까 우려하며 SNS 게시판의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조용히 덮으려는 행동을 취함
  - ※ 공정한 사안 조사 없이 SNS, 게시글 등을 삭제하도록 할 경우 사건을 은폐 · 축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2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해당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담임해제, 수업참여 배제, 연극부 지도 금지) 시킴</li> <li>②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가피해자를 파악함</li> <li>③ 직접적 피해를 본 연극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 조치(상담 등)를 시행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장은 해당 사안이 연극부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연극부 소속 학생들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행위 교사를 연극부 지도 활동에서만 배제시킴.</li> <li>②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닌 연극부 학생이나, 담임을 맡은 학급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li> </ul>
3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장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성고충상담창구의 책임교사에게 조사를 맡김.</li> <li>② 조사 결과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 학생들 및 그 보호자, 행위 교원에게도 통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장은 수사기관의 결정만을 기다리면 어떠한 조치나 조사도 지시하지 않음</li> </ul>

\* 위 두 경우 모두 피해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학교의 의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 행위 교사가 이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이나,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위의 사례의 경우는 전수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과 학교의 조사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학생 보호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사에 대한 조치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학교 측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함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4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 보호 조치를 위한 자치위원회와 행위 교사 조치 및 징계를 위한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를 개최함</li> <li>② 각 위원회에도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함</li> <li>③ 자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 대해 집단 심리상담을 시행하고, 피해가 심한 학생들에게는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함</li> <li>④ 행위 교사에 대해서는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에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졌음으로 판단하고, 학교장은 직권으로 행위 교사에게 1호(서면사과)와 2호(피해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4호(부서 전환)의 조치를 우선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장은 행위 교사에 대한 징계는 상부기관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미룸</li> </ul> <p style="text-align: right;">▼</p> <p>※ 징계는 상부기관에서 내리는 것이지만, 조치(서면사과, 피해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부서 전환, 학교장 주의 및 경고 등)는 학교장의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과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주어진 시일 이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위 교원에 대한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5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해 학생들과 행위 교사가 조치 결정을 수용할 경우 그대로 이행</li> <li>② 피해 학생들이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행정 심판(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송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안내함</li> <li>③ 행위 교사가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특별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재심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li> </ul>	

## 다. 교직원(피해자)-교직원(가해자)

**사례** OO 초등학교의 A 교감은 신규 발령을 받은 B 여교사에게 회식자리에서 “베이글이라는 말이 딱 B 여교사한테 맞는 말인 것 같다. 몸매가 육감적인데 얼굴은 중학생 같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다. 남자친구 있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B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1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해교사(B교사)는 첫 발령지에서 이러한 사안이 일어나 두렵고, 수치스럽고, 화가 났으나,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멘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성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 사안을 접수함</li> <li>②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사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에게 접수된 사안을 보고하고, 교육청에 성희롱 사안에 대한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함</li> <li>③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사의 요구 사항(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파악함</li> <li>④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사에게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의 진행 절차와 추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음날 출근하여 다른 교사에게 회식자리에서의 일을 들은 학교장은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B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승진을 앞둔 A교감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이 A교감에게 따로 이야기 하여 다시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번만 B교사가 참아달라고 부탁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p> <p>※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를 통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질 심문은 기급적 피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대발방지에 대한 서약을 받도록 하여야 함.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어설픈 화해 시도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함</p>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2 단 계	<p>① 피해교사가 교감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학교장은 직권에 따라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시킴.</p> <p>② 피해교사가 외부 성폭력 전문 기관의 지원(심리 및 법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성고충 상담원은 지역 내 외부 기관을 안내해줌.</p> <p>③ 관련자(피해자, 행위자, 목격자)들에게 비밀누설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함</p>	<p>① 학교장이 '기껏해야 말 한 마디 한 것 가지고' 혹은 '교감이 운이 나빴다'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장소(교무실)에 머물도록 함</p> <p>※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p> <p>※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할 때, 학교장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병가, 연가 등)을 사용할 수 있음</p>
3 단 계	<p>① 학교장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함. 이때 교원간 성희롱 사안에 경험이 많은 교육청 내 보건교사와 해바라기센터 소속의 전문가를 외부 전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안을 조사함</p> <p>②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행위자, 목격자를 면담하여 사안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회식장소에 CCTV가 있는지 등을 확인함</p> <p>③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등에 의해 A교감의 다른 유사 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A교감으로부터 성희롱을 겪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교원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함</p>	<p>① 본격적인 사안 조사 단계에서 징계와 승진 누락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A교감이 B교사 집을 방문하고 전화를 하는 등 개별 접촉하여 협박과 회유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p> <p>※ 이러한 경우 성고충상담원은 직접 혹은 학교장을 통해 행위자에게 직접 접촉을 삼가도록 말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제제를 할 수는 없음. A교감의 개별 접촉에 피해 교사가 불안함을 느끼면, 국가인권 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행위자의 접촉을 제재할 수 있음</p> <p>※ 이 경우 성고충상담원의 조사는 중지됨</p>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4 단계	<p>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A교감의 행위가 (언어적)성희롱에 해당하고 인정하게 되면, A피해교사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장은 직권 내에서 교감에 대한 조치 결정을 내림(예를 들어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서약서 작성, 특별연수 참석 등)</p> <p>②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교육청)에 보고함</p> <p>※ 학교장은 교감에 대한 인사 조치나 징계 권한이 없으나, 수사기관의 결과와 별도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 방지서약서 작성” 등의 조치는 가능함</p>	
5 단계	<p>① 교감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수용하면, 조치결과를 그대로 이행</p> <p>② 피해교사와 가해교감이 조치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불복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함</p> <p>③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사들에게 재차 비밀누설방지의 의무에 대해 안내함</p> <p>④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 유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함</p>	

## 라. 교직원(피해자)-학생(가해자)

**사례** OO 중학교의 A 교사는 평소 수업 시간에 남학생들이 자꾸 자신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거나 이상한 눈길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음. 그러나 십대 청소년 남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일거라 생각하며 학생들의 불편한 행동들을 가급적 무시하려고 함. 그러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여느 날처럼 낄낄거리는 남학생들 중 한명에게서 A교사를 그린 그림을 빼앗음. 해당 그림은 A교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유달리 도드라지게 그린 그림으로 그림 옆에는 남학생들이 기록한 A교사의 외모를 평가한 점수들과 코멘트들이 적혀있었음. A교사는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성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함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1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해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화가 났으나,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 사안을 접수함</li> <li>②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사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에서 접수된 사안을 보고하고, 교육청에 성폭력 사안에 대한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함</li> <li>③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사의 요구 사항(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파악함</li> <li>④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사에게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의 진행 절차와 추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장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 교사를 다독였고, 가급적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할 것을 종용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p> <p>*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가해(행위) 학생들과 합의를 하면 언제든 사안은 종료 될 수 있음. 그러나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되며 (2차 피해 발생), 합의를 이끌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를 유도해야 함</p>
2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해교사는 수업시간에 가해(행위) 학생들을 대면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학교장은 직권에 따라 피해 교사와 가해(행위) 학생들을 분리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해교사와 가해(행위) 학생을 분리 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교사에게 병가를 써 쉬도록 함</li> </ul>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2 단계	<p>② 피해교사가 외부 성폭력 전문 기관의 지원(심리 및 법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성고충상담원은 지역 내 외부 기관을 안내해줌</p> <p>③ 관련자(피해자, 행위자, 목격자)들에게 비밀누설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함</p>	<p>※ 피해자가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과 치료를 위해 병가를 요청할 경우 병가처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가해(행위)학생들을 분리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병가를 원치 않는 교사에게 병가를 쓰고 쉬도록 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p>
3 단계	<p>① 학생생활지도부나 선도위원회에서 행위(가해)학생을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추가 행위(가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함</p> <p>② 피해교사에 대한 조사는 성고충상담창구에서 담당하며, 이때 행위(가해) 학생에 대한 요구 사항(사과 및 징계)을 정확히 파악함</p> <p>③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도 보고함</p>	<p>① 가해자의 부모와 변호사가 학교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 교사를 비난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p> <p>※ 이러한 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며, 학교는 피해교사를 보호해야 함</p>
4 단계	<p>① 선도위원회(행위(가해)학생들)와 교권보호위원회(피해교사)를 열어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 결정을 내림.</p> <p>② 행위(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 교사가 원하는 서면사과, 학내봉사, 그리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해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로의 전근과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요양의 조치가 내려짐</p>	<p>① 피해 교사가 가해(행위) 학생들과 동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전근을 원하여, 동일 지역청 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으나,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통해 유별난 교사, 성폭력 피해자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를 피해교사가 인지하게 됨</p> <p>※ 행위(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비밀누설 조항에 대해 인지시켜 소문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함</p>

	적절한 처리 예시	부적절한 처리 예시
5 단 계	<p>① 피해 교사 및 행위(가해) 학생들이 조치 결과를 수용하면 조치결과를 그대로 이행함</p> <p>② 피해 교사가 조치결과에 불복할 경우 수사 기관에 사안을 신고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시할 수 있음</p> <p>③ 가해(행위) 학생들의 조치결과는 그 결과가 퇴학일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부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1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6. 5. 29.〉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2014. 5. 28.〉
-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5. 2. 3., 2015. 12. 1.〉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2015. 2. 3., 2016. 5. 29.〉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2015. 2. 3.〉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2015. 2. 3.〉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1. 21., 2015. 2. 3.〉
-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2018. 4. 17.〉
-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2014. 1. 21., 2015. 2. 3., 2016. 5. 29.〉
- [제목개정 2016. 5. 29.]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 2018. 4. 17.〉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져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신설 2011. 3. 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3. 30.〉

[제목개정 2011. 3. 30.]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 · 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3. 13.]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장 피해자 보호 · 지원 시설 등의 설치 · 운영

- 제10조(상담소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 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18., 2018. 3. 13.>
-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상담소의 설치 · 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2. 18., 2015. 2. 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 12. 1.〉
  - ⑤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2015. 12. 1.〉
- [제목개정 2012. 12. 18.]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1. 3. 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 ·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 ·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5. 2. 3.〉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자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21., 2015. 2. 3.〉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 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4. 1. 21., 2017. 12. 12.〉

1. 미성년자, 파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 2. 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2. 3., 2018. 3. 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13.〉

[본조신설 2012. 12. 18.]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6. 3. 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 2018. 3. 13.〉

④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 2018. 3. 13.〉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5. 2. 3., 2015. 12. 1., 2016. 3. 2., 2018. 3. 13.〉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 ·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 · 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 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 · 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상담소 ·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 ·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드는 경

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0.〉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2. 3.〉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 12. 18.〉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보칙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30.>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자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2. 2.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 2. 1., 2012. 12. 18., 2018. 3. 13.〉

1. 제10조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3.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12. 18., 2015. 12. 1., 2017. 3. 21.〉

## 부칙 〈제1559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특정범죄자관리과) 02-2110-384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

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 · 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 · 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0. 16.〉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2. 12.〉

[제목개정 2017. 12. 12.]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0.〉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자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개정 2013. 4. 5.〉

**제19조** 삭제 <2013. 4. 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 · 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 · 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

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을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을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을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4. 5.>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 · 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 · 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 ·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을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 ·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 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

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 · 제13조의 범죄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 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 대상자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

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자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0.〉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 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

에 대해서는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 12. 20.〉

⑦ 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 통지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2. 20.〉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전문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5. 7.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고지명령
  -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8항
  -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 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 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총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 · 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 · 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 ·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기관"으로, "검사"는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개정 2016. 12. 20.〉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3. 4. 5.]

## 제4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리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 12. 20.〉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부칙** <제15792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640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 · 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 · 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 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해석상 ·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아동 ·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 · 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 ·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선도 · 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 · 배포 · 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위계(偽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

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③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 수명령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6.>

④ 법원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 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 제22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거나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자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加害者が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加害者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을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을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서류 · 증거물의 열람 · 등사)**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기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아동 ·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법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8. 1. 1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피해아동 · 청소년의 보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 · 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피해아동 · 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 · 청소년 등의 신체적 ·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 · 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 청소년
  2. 피해아동 · 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 · 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 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자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 한다.

**제43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⑤ 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돋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돋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이하 이 조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개정 2014. 1. 21.〉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자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 ·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 · 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 · 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개정 2014. 1. 21.〉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 · 입양신고 · 전입신고가 된 아동 ·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 · 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 · 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 · 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자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공개명령의 집행 · 공개절차 ·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56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 교습소 및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2018. 1. 16.〉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

[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 의하여 2013헌마585(2016. 3. 31.), 2015헌마98(2016. 4. 28.), 2015헌마359(2016. 7. 28.), 2015헌마914(2016. 7. 28.), 2014헌마709(2016. 10. 27.)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4.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6.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③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보호관찰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자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해 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리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

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1. 16.〉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1. 16.〉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 부칙 〈제15452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형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관련 부분 발췌)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 ·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 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

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4조 삭제 <2012. 12. 18.>[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 12. 29., 2012. 12. 18.〉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6조** 삭제 <2012. 12. 18.>



## 부록 5

사안 처리 관련 서식

본 매뉴얼에 제시된 양식은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제정 2017. 9. 1. 지침 제68호)’, 교육부(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서울시 교육청(2015)의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참고 하였음.

## 1. 신고 및 접수

1-1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2 **필수**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 2. 사안조사

2-1 **선택** 학생 확인서

2-2 **선택** 보호자 확인서

2-3 **선택**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2-4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2-5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1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3-2 **선택** 서면 진술(의견)서

3-3 **선택** 기피 신청서

3-4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3-5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3-6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3-7 **필수**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3-8 **필수** 학부모위원 신청 및 선출

3-9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촉(임명)장

## 4. 분쟁조정

4-1 **선택** 분쟁조정 신청서

4-2 **선택** 분쟁조정 참석 요청

4-3 **선택** 분쟁조정 회의록

4-4 **선택**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4-5 **선택** 분쟁조정 합의서

## 5. 성고충 상담 관련 서식

5-1 **예시**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서

5-2 **예시** 성희롱 고충 상담일지

5-3 **예시** 고충접수 처리대장

5-4 **예시** 성고충 사안조사결과 보고서

5-5 **예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임명)장

5-6 **예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촉 동의서

5-7 **예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5-8 **예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5-9 **예시** 서면 진술(의견서)

5-10 **예시** 사과문 및 각서

5-11 **예시** 합의서

5-12 **예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  
(당사자 통보용)

5-13 **예시** 성희롱심의위원회 조치결과 보고서  
(교육청 보고용)

##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또는 신고기관	신고내용	사실 통보		작성자 (서명)	확인 (책임교사)
				피해학생 학부모	가해학생 학부모		
2018-1							
2018-2							
2018-3							

[참고] 사안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학교 여건에 따라 교감 전결 가능(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사안번호:

학교명		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휴대전화	
접수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				접수·인지 경로	*피해자 직접신고 *담임, 보호자 신고 *주변 학생 신고	
접수자·인지자 (성명, 신분)							
신고·인지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관련학생	성명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기타 사항	(고소, 소송 여부 등)  *아동대상 성관련 사안의 경우 반드시 112 또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수사기관 신고(신고 일시 기재)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여부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48시간 이내 보고)

## 학생 확인서

\*사안번호:

1	성명	학년/반	/	성별	남/여
2	연락처	학생		보호자	
3	관련학생				
4	사안 내용 <small>※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small>				
5	필요한 도움				
6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 보호자 확인서

\*사안번호:

1.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1	학생 성명		학년/반	/	성별	남/여
2	사안 인지 경위					
3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 정신적-			
4	자녀 관련 정보	교우 관계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5		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6		자녀 확인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게 말한 것)			
7	현재까지의 부모 조치		(병원 진료, 회해 시도, 자녀 대화 등)			
8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9	현재 부모의 심정		(어려운 점 등)			
10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부모 의견, 바라는 점		(보호자가 파악한 자녀의 요구사항 등)			
11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피해 · 가해학생) 긴급 조치 보고서

\*사안번호:

대상학생	학년/반		성명	
사안 개요 (조치원인)	※ 접수한 사안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조치 내용	피해학생	조치사항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가해학생	조치사항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조치일자	년 월 일			
긴급 조치의 필요성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① 의견청취 완료 (일시: , 방법: )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학생 및 학부모 통지	통지일자			
	통지방법			
			작성자:	(인)
			확인자:	학교장 (인)

[참고]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법률 16조1항에 의거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  
가해학생 긴급 선도초지는 법률 17조4항에 의거 즉시 자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함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사안번호:

1	접수 일자	20 년 월 일		담당자	
2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번호	성별	비고 (장애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영역 기재)
5	사안 개요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6	쟁점 사안	A 학생의 주장 내용			
		... ...			

7	사안 진행 및 조치 사항	
8	특이사항	긴급조치 여부, 성관련 사안, 치료비 분쟁, 고소 및 고발,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참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4항에 의거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 보고

\*사안번호:

학교명		학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접수 일자							
관련 학생							
자치위원회 예정일시							

[참고] 전담시수에서 사안조사가 종료된 이후 교육청에 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보고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보고하지 않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제 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4. 사안개요 (사안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학교폭력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전화: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학생 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00학교로 자치위원 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위원 및 피·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송부

## 서면 진술 (의견)서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00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귀중

## 기피 신청서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small>※ 해당 양식은 보호자가 기피를 신청할 경우에만 활용함.</small>				
2000.00.00. 000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b>00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귀중</b>				

[참고] 해당 양식은 보호자가 기피를 신청할 경우에만 활용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20 학년도 제 회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안번호:

1.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3. 참석자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교 사 ○○○	경찰관 ○○○
학 생 ○○○	학부모 ○○○
학 생 ○○○	학부모 ○○○

4. 회 순

- 1) 개회
- 2) 지치위원회 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 3) 사안보고
- 4) 피해학생족 확인 및 질의응답
- 5) 가해학생족 확인 및 질의응답
- 6)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 · 교육조치 논의 및 결정
- 7) 폐회

5. 상정 안건

– ○○○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

사안개요

## 6. 회의 내용 (발언 요지)

- ○○○ 학생

- ○○○ 학부모

- ○○○ 위원

- ○○○ 위원

##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만장일치

가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8호 전학	찬성(7) 반대(2)
○○○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	학생 10시간, 보호자 5시간	
○○○	제17조 제1항	제5호 특별교육 10시간	만장일치
○○○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보호자 5시간	

작성자: (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사안번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 반	성명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원인	2000.0.0.0.0 시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을 폭행하여 전자3주 상당의 상해를 입함. ○○○ 학생은 2000.0 월부터 0 월까지 지속적으로 ○○○ 학생에 대하여 ○○라고 놀리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자치위원회 개최	년      월      일		
조치사항	피해학생	제16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학생	제17조제1항 제6호 출석정지 ○시간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시간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시간	
재심안내	피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의2제1항)	
	가해학생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의2제2항)	
가해학생 불복절차 안내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 ○○○, TEL : 000-000-0000)

2000.0.0.0.0.0

학교장 (직인)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피·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1)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 관련 칸을 추가하여 모든 가해학생 조치결과에 대해 통지하고
- 2) 가해학생에게는 위 양식을 활용하여 피해학생의 조치결과와 본인의 조치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사안번호:

학교명	학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접수일자						
사건개요 (2~3줄로 요약)	<p>2000. 0. 0. 00시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000 학생이 000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3주 상당의 상해를 입함. 000 학생은 2000. 0월부터 0까지 지속적으로 000 학생에 대하여 00라고 놀리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p>					
자치위원회	개최 일시					
	참석위원 수	재직 자치위원 명 중 명 참석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가해 · 피해 모두 연관된 학생은 각각 기재)	피해학생	(성명) (학번)				
		(성명) (학번)				
	가해학생	(성명) (학번)				
		(성명) (학번)				
특이 사항						

2000. 0. 0. 000 학교

[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 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성명			소속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학부모 위원( ), 외부 전문가 위원( ), 교사위원( )						

상기 본인은 ○○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기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22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 학교장 귀하

## 학부모의원 신청 및 선출

20○○년도 제 호	○ ○ ○ 가정통신문	교 장 : ○ ○ ○ 교 감 : ○ ○ ○ 담당자 : ○ ○ ○
---------------	-------------	---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학부모위원 선출

- 가. 일시 : 20○○. ○. ○. ○○() 15:00 학부모 총회
- 나. 장소 : 본교 ○○실
- 다. 선출 인원 : ○명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의 50% 초과)
- 라.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1) 위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위원은 계속 유지
- (2) 위원 중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신규 선출
- (3) 기준 기한 만료된 위원도 위촉 가능

마. 학교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됨

2. 신청마감일 : 20○○. ○. ○○.(요일) 00:00까지

3. 신청 장소 : 본교 ○○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20○○. ○. ○○

○ ○ ○ 학교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 이름			자녀 학년 반	
연락처	근무처		E-mail	
	자택		휴대전화	
입후보 소견				

[참고] 학부모총회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때 위 양식을 활용하여 학부모총회 안건 중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신청 및 선출 안내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촉(임명)장

성 명:

소 속:

주 소:

위촉(임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장 (인)

## 분쟁조정 신청서

\*사안번호:

신청인	성명	(남/여)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분쟁조정 참석 요청

\*사안번호: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 장소 :

3. 참석자 :

- 보호자 :

-

4. 사안내용 (2~3줄 사안 내용 요약)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 분쟁조정 회의록

1	일시	
2	장소	
3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li> <li>- 위원장 :</li> <li>- 위원 :</li> </ul>
4	진행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회사</li> <li>② 참석자 소개</li> <li>③ 분쟁조정 목적과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li> <li>④ 사안조치 및 문제의 쟁점 보고</li> <li>⑤ 피해측 사실보고 및 요구확인</li> <li>⑥ 가해측 사실보고 및 요구확인</li> <li>⑦ 자치위원회의 중재안 논의</li> <li>⑧ 요구조정</li> <li>⑨ 합의조정</li> </ul>
5	회의 내용	<p>▶ 현재 상황</p> <p>▶ 분쟁당사자(피해 측) 의견</p> <p>▶ 분쟁당사자(가해 측) 의견</p> <p>▶ 분쟁조정 결과</p>

##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사안번호:

분쟁당사자 (피해측)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분쟁당사자 (가해측)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개시일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

\*분쟁조정 결과

거부( )	중지( )	종료	성립( )
			불성립( )

\*사유

년      월      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 분쟁조정 합의서

\*사안번호:

분쟁당사자 (피해측)	성명: ○○○ (학년 반 번) 주 소: 전 화:
분쟁당사자 (가해측)	성명: ○○○ (학년 반 번) 주 소: 전 화:
〈합의 내용〉	
입회인	○○○○년 ○○월 ○○일
성명:	분쟁당사자(피해측) (인)
주소:	보호자 (인)
전화:	분쟁당사자(가해측) (인)
	보호자 (인)

〈법률 근거〉 분쟁의 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성희롱고충 상담 신청서(제7조 관련)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 (신청) 내용	<p>※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p>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공개사과( <input type="checkbox"/> )      2. 인사 조치( <input type="checkbox"/> )      3. 징계 등 처분( <input type="checkbox"/> ) 4. 기타( <input type="checkbox"/> )				
처리결과 (추후기록)					
※ 관련 자료 첨부					

## 성희롱고충 상담일지

상담일	20 . . .			사례번호	
내담자		회기	회	상담자	
상담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인터넷   ④ 기타				
상 담 내 용					
차기 상담일시 :      월      일      (      요일)      시					

## 성희롱고충 사안 접수 및 처리대장(제5조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희롱 관련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학교장

## 성희롱고충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1	접수일자		20 년 월 일		담당자		
2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전화번호	
3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전화번호	
4	긴급조치여부		피해자				
			행위자				
5	사안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6	현재상황	피해측					
		가해측					
7	사안진행 및 조치사항						
8	기타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임명)장

성 명 :

소 속:

주 소:

위촉(임명)기간: ~

위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장 (인)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연락처	근무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비고	외부전문가 위원( ) 교사위원( )			

상기 본인은 ○○학교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0조 및 ○○학교 성희롱 예방지침(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성고충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二〇一九年

성명 (서명)

○○학교장 귀하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위원 귀하

본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0조 및 ○○학교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제 회 성희롱고충심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안 건 :

4. 사안 개요(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년 월 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 학년도 제 회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 사안번호 :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석자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교사	○ ○ ○	교사	○ ○ ○

4. 회 순

- 1) 개회
- 2)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요 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 3) 사안보고
- 4) 피해자측 확인 및 질의응답
- 5) 가해자측 확인 및 절의응답
- 6)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논의 및 결정
- 7) 폐회

5. 상정 안건

– ○ ○ ○ 교사의 성고충 사안

사안개요

## 6. 회의 내용 (발언 요지)

- ○○○ 교사
- ○○○ 교사

- ○○○ 위원

- ○○○ 위원

- ○○○ 위원

##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			
가해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			
○○○			
○○○			
○○○			

작성자 : (인)

확인자 : 학교장 (인)

## 서면 진술(의견)서

\*사안번호 :

소속 :

이름 :

1. 성고충 사안에 대한 의견

2. 요구사항

3. 기타 의견

## 사과문 및 각서

\*사과대상 :

본 각서는 년 월 일 의 처리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서약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년 월 일 학교 성고충 상담창구에 접수된 성희롱 · 성폭력 사안에서 신고인에 대한 행위 사실을 인정합니다.

( )에게 끼친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유사한 성희롱 · 성폭력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인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 )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제 조, 비밀유지의무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자필 서명)

## 합 의 서

신고인 : 소속 : 연락처 :

피신고인 : 소속 : 연락처 :

본 합의서는 년 월 일 학교 성고충 상담창구에 접수된 성희롱 사안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관한 건입니다.

- 합의내용 ① △△△이 작성한 각서와 사과문 이행  
② 가해자 교육 이수  
③ ○○○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는 이 사안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는 이 사안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안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안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  
○○○ ( 서명 )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

### ■ 사안 개요

- 당사자( 행위자, 피해자 등 ) 개요

-

[직위 · 직급 성별, 연령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등 선택적 기재)]

- 사안 발생 일시 · 장소, 발생 경위 등

-

### ■ 사안 처리 조사 및 학교 조치사항

- 사안 처리 조사

-

(사안 접수, 사안 조사 및 성희롱 여부에 대한 결정 등 기술)

- 조치사항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

(행위자에 대한 교육여부 등, 징계조치 시 징계 정도, 부서전환 또는 대기 발령 등)

–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기술)

담당자 :

연락처 :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조치결과 보고서

학교명 :

일시 :

■ 사안 개요

- 당사자(행위자, 피해자 등) 개요

—

[직위 · 직급 성별, 연령 등(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등 선택적 기재)]

- 사안 발생 일시·장소, 발생 경위 등

—

■ 사안 처리 조사 및 학교 조치사항

- 사안 처리 조사

—

(사안 접수, 사안 조사 및 성희롱 여부에 대한 결정 등 기술)

- 조치사항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

(행위자에 대한 교육여부 등, 징계조치 시 징계 정도, 부서전환 또는 대기 발령 등)

—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기술)

담당자 :

연락처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2019년 2월 발행

- 발행 : 교육부
- 편집 : 교육부 교원정책과  
동국대학교 교원정책중점연구소
- 인쇄 : 동명기획(044-868-7542)

